##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90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김예지・김미애・엄태영

박덕흠 · 김소희 · 박정하

신성범 · 김대식 · 서천호

최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4조제1호 중 "제18조의3제3항"을 "제18조의4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고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
	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u>말한다.</u>
<u>&lt;신 설&gt;</u>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
	춘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
	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 재활의
	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u>제18조의2</u>(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 <u>저</u>의 설치 등) (생 략)

- <u>제18조의3(</u>장애친화 산부인과 운 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생략)
-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의 지정 취소
  - 2. (생략)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
<u>게 된 경우</u>
∥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
의 설치 등)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
<u>  18조의4</u>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
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현행
제18조의3과 같음)
∥24조(청문)
<u>.</u>
1. <u>제18</u> 조의4제3항

2. (현행과 같음)